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4. 5 선고 2015가단5394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A

변론 종결2017. 3. 8.

판결 선고2017. 4. 5.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서 2014. 12.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22,227,125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서 2014. 12.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2. 8. 접수 제503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 6. 17. 'D'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2회에 걸쳐 각 보증금액을 10,000,000원과 30,000,000원으로, 각 보증기한을 2014. 6. 17.까지(나중에 2015. 6. 17.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B은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6. 17.로 정하여 10,000,000원(이율 4.432%)과 30,000,000원(이율 4.2%)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나. 대위변제

B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5. 6. 17. 각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8. 1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합계 40,410,633원(= 원금 40,000,000원 + 이자 410,6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와 B의 금전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 1) 피고는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유한회사 E의 계좌로 2014. 10. 21.에 12,400,000원, 다시 2014. 10. 28.에 41,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B에게 합계 53,900,000원을 대여하였다.
- 2) B은 2014. 12. 8.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7,000,000원으로 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50349호로 2014. 12.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3) B은 2014. 12. 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7,000,000원으로 정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28308호로 2014. 12.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B의 재산 상황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B은 별지 재산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05,831,000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합계 667,622,460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¹⁾

마.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7. 13.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전남 해남군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2016. 7. 18.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2,227,1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위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원고의 이 법원 2015카단10315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호증, 을나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시장, 해남군수의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중앙새마을금고의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4. 12. 2. 무렵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2013. 6. 17.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을 고려하면 그 무렵 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5. 8. 1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여러 채권자들 중 한 명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B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B의 채무 중 별지 재산목록 '소극재산'란 제2, 5항 기재 각 채무가 일부 변제됨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11. 22.을 기준으로 하면 B의 소극재산은 393,489,650원에 불과하므로, B은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만일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별지 재산목록 '소극재산'란 제2항 기재 채무는 B의 적극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음으로써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인 B이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목록 '소극재산'란 제5항 기재 채무 150,722,460원은 이를 제외하더라도 B의 소극재산이 516,900,000원(= 667,622,460원 - 150,722,460원)에 이르러 여전히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자신은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22,227,125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소영

별지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의 적극재산 가액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는 대신 그 피담보채무액을 B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하기로 한다.